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706 호 2011. 8. 29(월)

공 고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543호[2011(FY2010) 지방재정공시 공고] 2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546호[울산광역시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3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547호[울산광역시북구 노인 구강보건 사업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4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19-7207 행정72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543호

2011년(FY2010) 지방재정공시 공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2010년도 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시하고자 『2011년(FY201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체무현황, 체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물품의 증감현황
-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통합재정정보

2.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결과
- 주민주요 관심사항
- 인건비,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집행현황,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기본경비·포상금 집행현황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연말지출 비율 등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3. 특수공시 분야

- 우리구 특수성, 주민수혜도, 사업규모 등 기준
- '10년도 우리구 주요사업 중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사업(10건)
 -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
 - 주상절리 관광밸리시설 조성
 - 명촌다목적구장 조성
 -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 천마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 중산문화센터 건립
 - 달천운동장 조성
 - 염포양정도서관 건립
 - 소방도로 개설
 -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

4. 게시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행정정보>재정정보>재정공시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052-219-7203)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546호

울산광역시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폐지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하였던 건강도시 업무가 건강증진사업과 상당히 중복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져 건강도시 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보건행정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19-7715, FAX 219-771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폐지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북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547호

울산광역시북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북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011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정이유

-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인에게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보건행정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219-7715, FAX 219-7718)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